

열심히 일한 당신이 받아야 할 임금

카드뉴스로 배우는 노동법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



무료 노동 상담

02)2269-9994

www.jglabor.org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근로기준법 제 2조 제5호

*근로의 대가

금품지급의무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금품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면 명칭과 관계 없이 임금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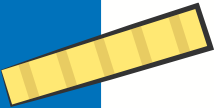


* 최저임금의 적용 방법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임금총액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

*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 : 수습기간 (최저 임금의 90%)

-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만 적용
 - 단순노무종사는 수습기간이라도 감액불가
 - 수습기간 3개월 이내
-



통상임금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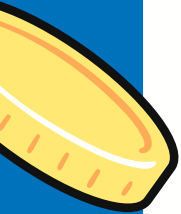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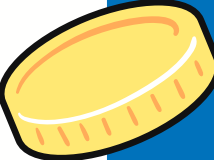
정기적: 일정 주기를 가지고 지급

일률적: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적: 소정근로에 대하여 조건 없이 지급

법정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차휴가 수당)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미리 기준으로 정하여진 임금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금, 산재보상금, 휴업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사후에 확정되는 임금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법정기준근로수당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야근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취업규칙등에 정한 경우)
근로할 경우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가산 지급

보상휴가제

법정수당은 임금으로 지급하는것이 원칙.
다만, '근로자의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법정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퇴직급여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경우를 제외 모든 사업장에 적용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DB)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이
적립금 운영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

지급액은 퇴직금과 같음

확정기여형 (DC)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영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

사용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적립